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용균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123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이용균, 김성준, 김영철,
김용일, 김인제, 박승진,
이영실, 임규호, 임종국,
정준호, 홍국표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각 자치구 및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의4).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

1. 직전연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
2. 누적 1,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
3.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하는 사람

②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
2. 누적 5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
3. 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또는 면제
4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

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0조의4(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)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직전연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2. 누적 1,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3.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하는 사람 <p>②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. 누적 5,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. 서울특별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또는 면제 4.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 <p>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</p>

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
여야 한다.